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한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119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.

발 의 자:김한규·강경숙·정준호

이성윤 • 김종민 • 위성곤

한준호 · 서미화 · 이기헌

문대림 • 민병덕 • 박정현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인구위기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가 없고, 이에 따른 상임위원회 또한 존재하지 않음.

그러나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하여 경제와 안보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됨. 따라서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, 국가의 중장기적인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부처의 필요성이 절실히요구됨.

이에 인구미래부 신설과 더불어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 부분도 수정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'보건복지위원회'소관업무에 '인구미래부소관에 속하는 사항'조항을 명시하고자 함(안 제37조제1항제13호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611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1항제13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인구미래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7조(상임위원회와 그 소관) ①	제37조(상임위원회와 그 소관) ①		
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			
항은 다음과 같다.			
1. ~ 12. (생 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		
13. 보건복지위원회	13		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나. 인구미래부 소관에 속하		
	<u>는 사항</u>		
<u>나.</u> (생 략)	<u>다.</u> (현행 나목과 같음)		
14. ~ 17. (생 략)	14. ~ 17. (현행과 같음)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